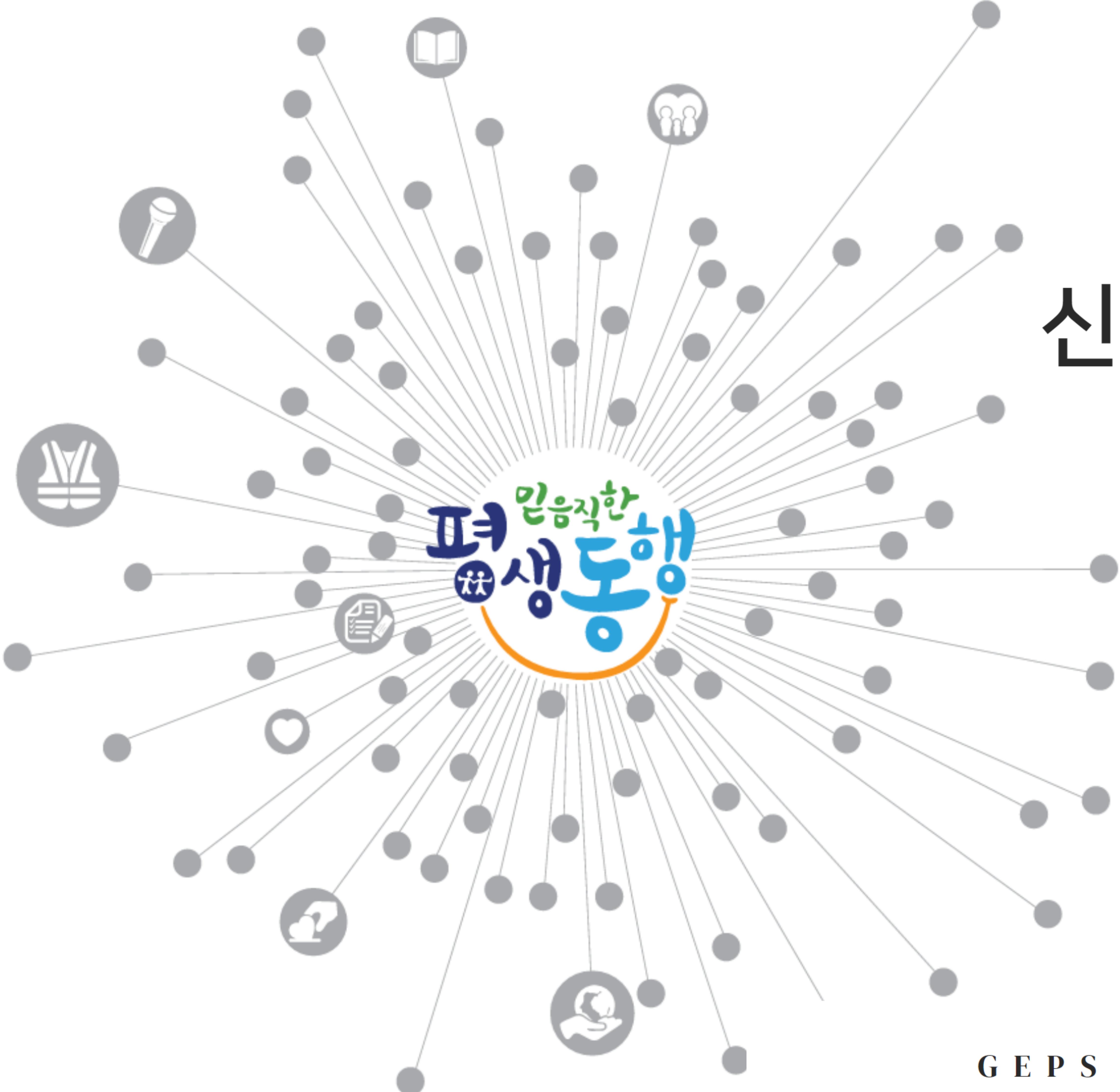


2022.07.



# 신규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

공무원의 든든한 행복파트너  
신뢰받는 연금복지전문기관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재해보상제도 편

[www.geps.or.kr](http://www.geps.or.kr)

G E P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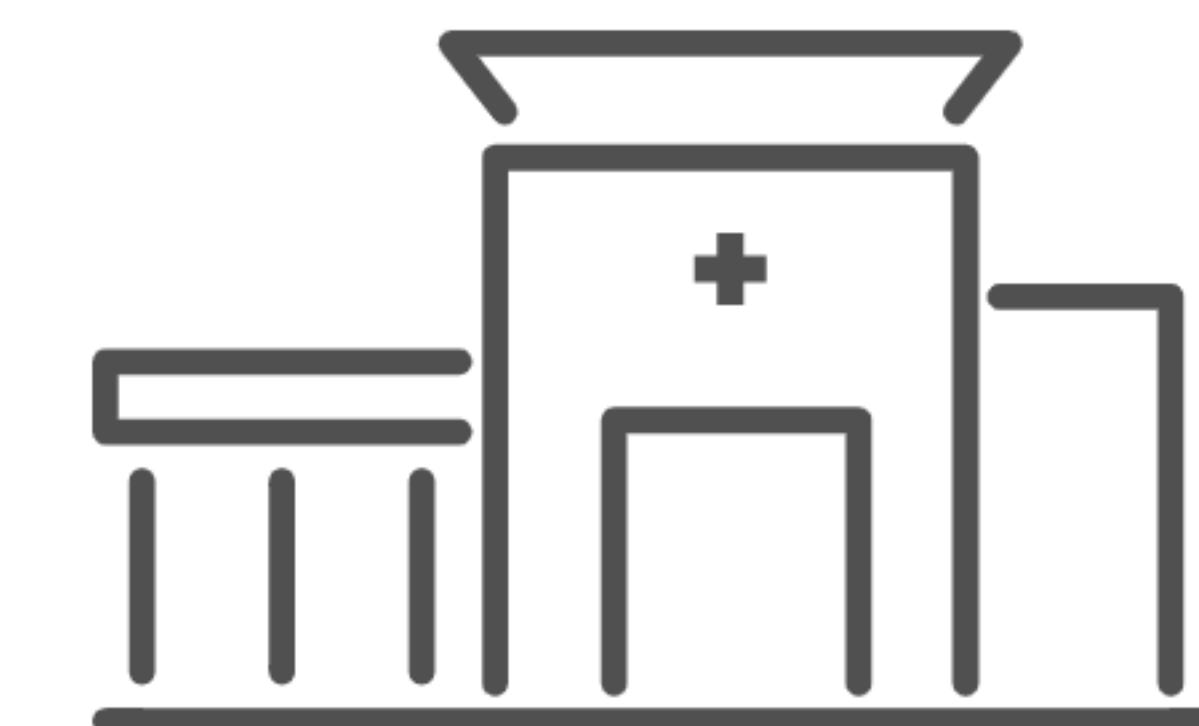
# 재해보상제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거나 사망한 때

신속한 쾌유 및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보상급여를 지급



#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로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

부상, 질병

요양급여(치료비)

재활급여

장해

장해급여, 간병급여

사망

순직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를 진압하러 갔다가 화상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폐결핵 환자인 현행범 조사 중 감염이 된 경우"



#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출퇴근길 사고



점심시간 사고



체육행사 중 사고

#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출퇴근길 발생한 사고

1. 매번 다니던 경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 중 넘어져 다친 경우
2.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3.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다가 다친 경우

#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출퇴근길 발생한 사고

1. 매번 다니던 경로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 중 넘어져 다친 경우 YES
2.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YES
3.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다가 다친 경우 NO

#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

1. 점심식사를 하러가다가 빗길에 넘어져 다친 경우
2.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친 경우
3. 가르치는 학생들과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

1. 점심식사를 하러가다가 빗길에 넘어져 다친 경우
2.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친 경우
3. 가르치는 학생들과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YES

NO

YES

# 회식이나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



체육행사 중 발생사고

1. 전 직원이 참석한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발생한 사고
2. 사전계획 없이 사적인 SNS로 일정 공지 후 사비로 계산된 술자리에 참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3. 소속 기관의 체육행사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 회식이나 체육행사 중 발생한 사고



체육행사 중 발생사고

1. 전 직원이 참석한 회식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발생한 사고
2. 사전계획 없이 사적인 SNS로 일정 공지 후 사비로 계산된 술자리에 참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3. 소속 기관의 체육행사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YES

NO

YES



## 재해보상급여의 종류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시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지급

	급여의 종류	시효
요양급여	-	3년
재활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3년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5년
간병급여	-	3년
재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재해유족급여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부조급여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3년



##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함),  
 의무기록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제출

**기간연장 승인**      공무상요양 승인기간을 초과하여 요양(치료)하고자 할 때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제도

**추가상병 승인**      최초 승인 신청시 누락되었거나 치료과정에서 새로이 생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승인 신청하는 제도



### 신청기한 및 절차

- 요양급여비용 발생일부터 3년 이내
  - 공무원이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신청하거나 소속기관의 경유없이 직접  
공단(재해보상실)에 신청
  - 해당기관은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확인 한 후 공단에 이송
- ※ 연장승인은 본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



##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

- 건강보험 적용 급여와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인사혁신처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으로 정하는 급여를 포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공무상요양(재요양, 기간연장) 승인을 받은 후 요양급여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는  
자동환급되며, 건강보험 비적용 급여는 공단에 청구 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호비 등의 특수요양급여가 지급됨



#### 청구기한 및 절차

-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승인결정일로부터 3년, 요양승인결정일 이후  
요양승인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매 요양일로부터 3년내 청구)



#### 구비서류

- 요양급여비용 청구서
-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 진료비(비급여) 세부내역서(건강보험청구 코드 기재), 기타 간호기록지 사본 등



## 재활운동비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이 수영, 요가 등 재활운동을한 경우 해당 비용을 월 10만원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심리상담비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을 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해당 비용을 3개월 이내 최대 10회, 회당 10만원 이내에서 실비 지급  
심리상담비는 미리 심리상담 승인을 받아, 심리상담전문기관에서 상담을 실시한 후 청구 가능



### 청구기한 및 절차

재활운동·심리상담일로부터 3년 이내 공무원이 직접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 구비서류

#### - 재활운동비

청구서, 영수증, 출석확인서, 운동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사소견서(필요에 따라 공단 요청 시 제출), 합의서(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출)

#### - 심리상담비

- 1) 승인신청시 : 승인신청서, 다차원심리검사지(L형), 의무기록지(필요에 따라 공단 요청 시 제출)
- 2) 비용청구시 : 청구서, 영수증, 출석확인서, 상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담사 자격증 사본, 합의서(가해자가 있는 경우 제출)



## 장해급여

### 장해연금

장해등급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사망시 유족에게 60% 승계)

※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52% ~ 9.75%

※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와 함께 지급

### 장해일시금

5년분의 장해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1회만 지급)



## 장해급여

청구기한 및 절차

퇴직 후 장해확정 시 : 장해확정일부터 5년 이내

장해확정 후 퇴직 시 : 퇴직일부터 5년 이내

퇴직 당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경유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구비서류

### 1. 청구인

- 장해급여 청구서
-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 공무원 재해보상 척추 및 신경계통기능 장해소견서 또는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 2.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 장해경위조사서

※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아래자료 별도 제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청구인)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전 2회분, 내과질환에 한함)(청구인)
- 공무상 질병·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소속기관)



## 간병급여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간병급여를 지급

### ※ 간병급여 지급기준금액(1일당)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원	29,840원
가족·기타간병인	41,170원	27,450원

※ 해당 기준은 고시 시행일('21.1.1.) 이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20.12.31. 이전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해서는 종전의 간병급여 지급기준(간병인 유형에 관계없이 상시 간병급여 일 41,170원, 수시 간병급여 일 27,450원)을 적용



## 간병급여



### 청구기한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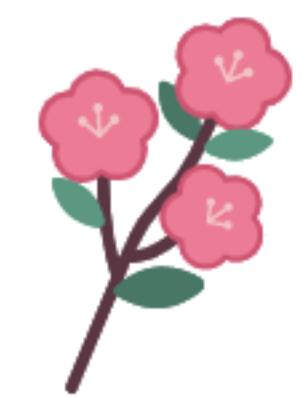
간병급여 발생일부터 3년 이내

공무원이 직접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 구비서류

- 간병급여 청구서
-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최초 간병급여 청구 시에만 제출)
- 간병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
- 전문간병인(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 가족관계증명서(간병한 가족이 전문간병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간병급여 심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가족간병인의 경우에만 제출)



## 순직유족급여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때 지급 —

### 순직유족급여 지급 기준

순직유족보상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금액

순직유족연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 + 5~20%(유족가산금),  
최대 58% 가능

유족가산금 : 유족 1인당 5% 씩 최대 20% 가산

### 순직유족급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소 0.5배 ~ 최대 1.6배



## 순직유족급여



### 청구기한 및 절차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망 당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경유,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 구비서류

#### 1.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

#### 2. 소속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전 2회분, 내과질환에 한함)
- 공무상 질병·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때,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

범인체포,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화재진압, 인명구조, 경호업무, 감염병의 확산방지, 산불진화, 국외에서 입은 재해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지급 기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 5~20%  
(유족가산금), 최대 63%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사망 당시(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대간첩작전 중 사망 : 60배)

※ 유족가산금 : 유족 1인당 5% 씩 최대 20% 가산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최고·최저 보상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소 0.5배 ~ 최대 1.6배



#### 청구기한 및 절차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망 당시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 경유, 공단(재해보상실)에 청구



#### 구비서류

##### 1. 청구인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서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

##### 2. 소속기관

- 사망경위조사서
- 건강진단결과통보서 및 문진표 사본(발병전 2회분, 내과질환에 한함)
- 공무상 질병·부상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 재난부조금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소실·유실·파괴되어 손해를 입은 때 재난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3.9배 지급

### ※ 재난부조금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완전히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1/2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1/3 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급여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



## 재난부조금



### 청구기한 및 절차

- 재난발생일부터 3년 이내
- 국가직 공무원은 공단 지부에 청구  
※ 소방공무원은 해당 소방서 또는 소방본부에 청구
-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청구
- 교육직 공무원은 해당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청구



### 구비서류

- 재난부조금 청구서
- 피해상황확인서(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소방서장 발행)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등본 (공무원 상시 거주 주택으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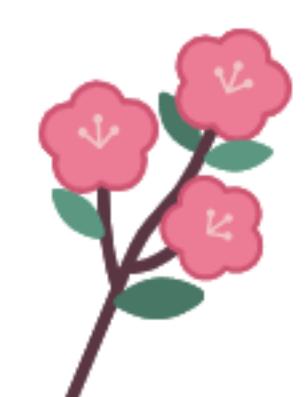


##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배우자에는 **사실혼을 포함**(대법원 판례선고일인 2019.11.14. 이후 급여 지급사유 발생건)하며,  
공무원(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모, 손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미지급



## 사망조위금



### 청구기한 및 절차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공단홈페이지 종합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

- 국가직 공무원(공중보건의 포함)은 공단 지부에서 지급
- 소방·지방·교육직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지급



### 구비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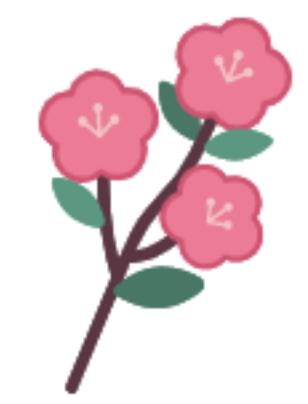
- 사망조위금 청구서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첨부)
-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사실혼 배우자 및 그 부모 사망시)



##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수행사망자 인정기준과 특례 조항 등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새롭게 마련

공무수행사망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할 경우, 순직 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과 이에 따른 급여(사망조위금 제외) 및 예우 적용



## 공무수행사망자 지원 제도

### ※ 보상 및 예우

#### 1. 경제적 보상

-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그대로 유지
-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더라도 순직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위험직무순직유족 보상금만을 추가로 지급

#### 2. 보훈 등 예우 지원

- 『국가유공자법』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법』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보훈처의 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법상의 교육·취업 등의 지원